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. 6. 5 .----- 최광렬의원의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39회 임시회(개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6.6.1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사하구 행정기구표의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의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개정하고, 전자이미지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명칭을 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개정 (안 제2조제2항제3호)
- 전자이미지공인의 효율적으로 관리(안 제2조의2 신설, 제4조, 제5조, 제6조 단서 신설, 제8조제3항-제4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사하구의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개정에 따라 직인명칭 변경과 공인의 등록사항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

- 기존의 『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』 직인을 『도시위원회위원장』 으로 명칭 변경 등록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하구 직제개편 및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
- 우리구 의회에서 사용중인 공인중 대외적 발신공문서에 날인하여 사용하던 일반인영과 공공기관 등 전산망이 연결되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인영을 각각 분리하여 대장에 등록관리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- 또한, 전자이미지 인영 경우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단서 조항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- 실제 시행 사용되어 온지가 오래되어 왔으나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인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